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경력과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6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3항 신설 등)	2
[참고]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사업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1. 20.

다. 회부연월일 : 2026.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7조의2¹⁾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고경력과학기술인”으로 지칭하고 교육, 창업, 일자리 연계, 연구 개발 사업 참여 등 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또한, 동 법 시행령 제17조2)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를 일정 직위(책임연구원 이상, 조교수 이상, 연구책임자 이상, 부서의 책임자 이상 등) 경력자 또는 기술사·기능장 자격 취득자,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경우 관련 사업의 기획·수행·성과관리 등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퇴직한 석·박사급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 사업(참고)을 추진 중인바, 동 사업을 포함한 관련 시책을 전문기관이 전담·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지원체계의 연속성과 집행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기능·업무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해 보임.

○ 특히 현행법상 활용 장려 시책(§17의2①)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17의2②)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장려를 위한 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자구를 정비하여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유사 입법례>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u>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u>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u>조사·연구</u>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u>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고경력과학기술인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9

□ 개요

- 고령층 연구 인력 증가, 기업·기관의 고경력 기술개발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 혁신 제고
- (예산) '26년도 33억원('25년, 9억원)

□ 주요 내용

- **중소기업 단기 연구원 지원사업**(9억원, 25년 신규)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와 특성에 따라 공정개선, 시험검증,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 연구원 채용지원
 - 지원대상: (기업)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중소기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인 단체 활용 공동연구 지원**(3억원, 26년 신규)
 - 과학기술인 단체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 지원대상: (기업)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애로기술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시니어 과학기술인 공공기관 활용·지원**(18억원, 26년 신규)
 - 산업계 출신의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공기관 업무, 연구과제 등의 수행에 활용을 지원
 - 지원대상: (공공기관) 산업계 출신 고경력 연구기술 인력에 대한 연구원 채용 수요가 있는 출연(연)·과기원, 공공기관 (인력) 공공기관에서 연구하기를 희망하는 산업계 시니어 과학기술인
- **시니어 과학기술인 기반구축**(3억원, 25년 신규)
 -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체계적 관리(DB 확대,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 등), 사업지원(경력전환 교육, 실태점검 등) 및 성과확산 등 추진